

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8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발 의 자 : 김화숙, 경만선, 권수정,
김달호, 김상훈, 김용석,
김용연, 김제리, 김혜련,
박기열, 송도호, 송재혁,
이병도, 임종국, 장상기,
황인구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원자폭탄피해자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효과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.
- 나.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구체화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원계획 수립·시행)”을 “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그 밖에 원폭피해자”를 “원폭피해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그 밖에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3. 원폭피해자 추모와 관계되는 사항
4. 각 호 지원에 따른 재정계획

제7조를 삭제하고, 제5조,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, 제7조 및 제11조로 하며,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원폭피해자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단체

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사회복지·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소관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

5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”를 “기능을 수행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시

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1. 지원계획 수립에의 자문
2. 지원계획의 평가

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 시장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가 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(이하 “원폭피해자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<u>사람</u>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</u>--- ----- .</p>
<p>제4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p>1. <u>추진목표 및 추진방향</u></p> <p>2. <u>추진방법</u></p> <p>3. <u>재원 조달방안</u></p> <p>4. <u>유관기관과의 협력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 ----- ----- 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 <u>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</u></p> <p>3. <u>원폭피해자 추모와 관계되는 사항</u></p> <p>4. <u>각 호 지원에 따른 재정계획</u></p> <p>5. <u>그 밖에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</p>

5.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제5조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
2.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

사항

1. 원폭피해자-----
-

제5조(원폭피해자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---
--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-----

② -----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원계획 수립에의 자문
2. 지원계획의 평가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·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

2. 원폭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
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사항은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.

<신 설>

3. ----- 위원장-----

<삭 제>

<삭 제>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사회복지·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소관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

5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 (생략)

제11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<신 설>

제10조 (생 략)

제10조(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 시장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가 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문서번호	2021020200000022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	담당 :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
접수일 : 2021.02.02	
회신일 : 2021.02.02	내용문의 : 02-2180-7942

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(정의)에서 원폭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10조(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을 신설함에 따라 자녀 및 손자녀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치료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(진료)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치료(진료) 지원 비용 등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- 안 제5조(원폭피해자 지원사업) 신설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 - 기타 개정 내용은 비용의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